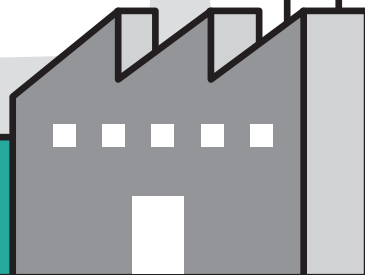


환경오염피해 어디서 도움받나요?

- 환경오염피해 자가진단 노트 -



순서

가. 자가진단 노트란?

- 1. '자가진단 노트'란 무엇인가요? 04
- 2. 노트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05
- 3. 작성한 노트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05
- (참고) 한눈에 보는 환경오염피해 자가진단 06

나. 인적사항

08

다. 나에게 맞는 제도 찾기

09

라. 나의 환경오염피해 정리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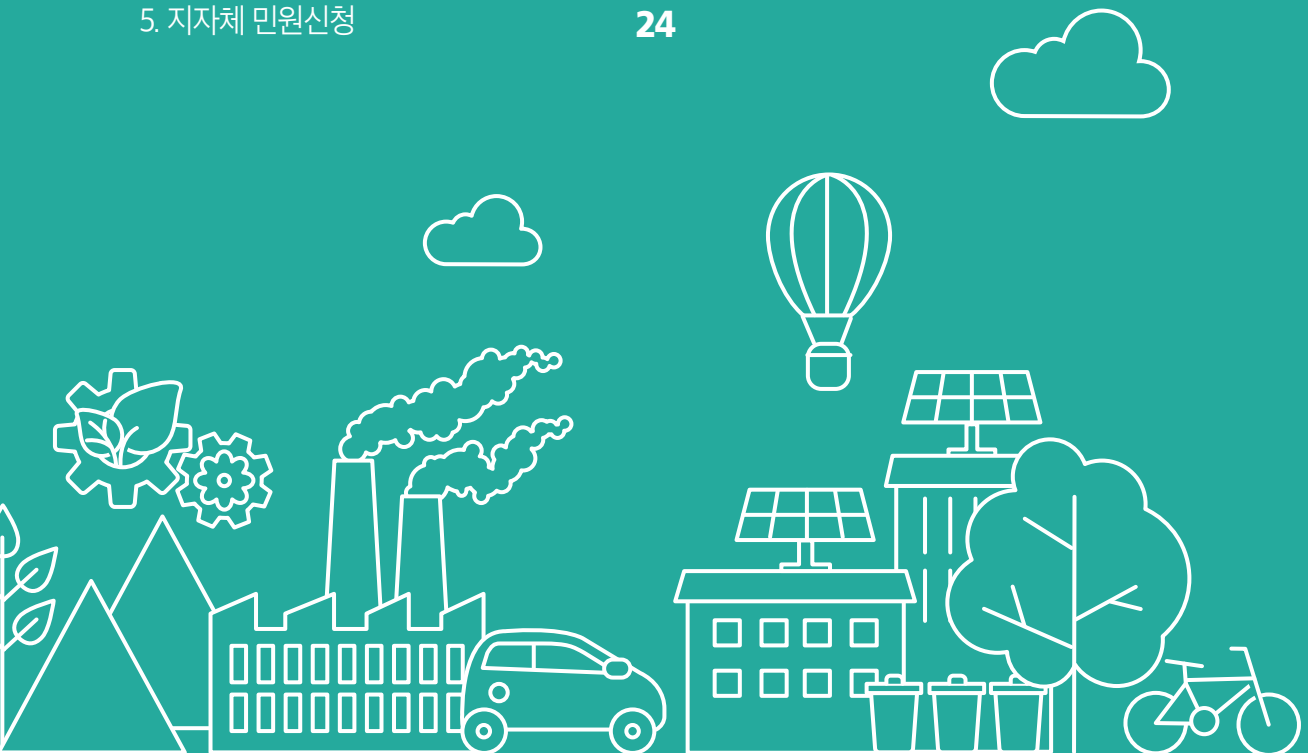
환경오염피해 자가진단 노트

[부록 1. 피해자 지원제도]

1. 환경오염 피해구제 신청	13
2. 취약계층 소송지원 신청	16
3. 건강영향조사 청원	19
4. 분쟁조정 신청	21
5. 지자체 민원신청	24

[부록 2. 기타 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31
대한변호사협회	31



가. 자가진단 노트란?

1

자가진단 노트란 무엇인가요?



-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어디에 무엇을 문의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셨을 것입니다.
- 자가진단 노트로 환경오염 피해 여부를 직접 진단하여 귀하에게 필요한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경오염 피해구제, 소송지원 등 관련 제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연락처 및 신청 방법 등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노트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본인의 상황, 환경오염피해 등을 구체적·사실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사실이 아닌 내용이나 과장하여 기재하면 정확한 제도 안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3

작성한 노트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와 관련 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해 보세요.
- 공무원 또는 변호인 등과 상담할 때 자가진단 노트를 보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한눈에 보는 환경오염피해 자가진단

문1

귀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있나요?

있습니다

문2

귀하의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시설
(환경배출시설, 인근 공장 등)이 있나요?

있습니다

문3

귀하의 환경오염피해와 관련하여
어떤 지원을 원하시나요?

환경오염
피해구제
신청

손해배상
소송지원
신청

지자체
민원신청

건강영향조사
청원

분쟁조정
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대응실)

지자체

환경부
(환경피해
구제과)

환경부
(환경분쟁조정
위원회)



없습니다
(설문종료)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문4

귀하의 환경오염피해와 관련하여
어떤 지원을 원하시나요?

환경오염
피해구제
신청

지자체
민원신청

건강영향조사
청원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환경피해대응실)

지자체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대응실)

나. 인적사항

문1 귀하의 연령, 성별 및 연락처

출생연도	나 이	성 별
(예) 1960	61	남성

문2 환경오염피해를 받은 시기에 거주하던 지역

주 소 지

(예)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환경오염피해란?

공장·사업장 등에서 배출된 대기·수질·토양 오염물질 및 소음·진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

문3 환경오염피해를 받은 지역에서 거주하신 기간은?

- ① 1년 미만 ② 1~3년 ③ 4~6년 ④ 7~10년 ⑤ 11~20년
 ⑥ 21년 이상 ⑦ 알 수 없음

환경오염 피해지역 거주기간

(예) 2013년 3월 ~ 2018년 9월

다. 나에게 맞는 제도 찾기



※ 이 부분은 응답자분들께서 입으신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원하시는 조치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안내해 드리기 위한 문항입니다.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된 각 제도 관련 내용은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1 귀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있나요?

- ① 있습니다. (문2번으로 가세요) ② 없습니다. (설문종료)

문2 귀하의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시설(환경배출시설, 인근 공장 등)**이 있나요?

- ① 있습니다. (문3번만 응답하세요) ② 없습니다. (문4번만 응답하세요)

문3 귀하의 환경오염피해와 관련하여 **어떤 지원을 원하시나요?**

- ① 환경오염 피해구제 신청
(부록1. '환경오염 피해구제 신청'[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종료)
- ② 손해배상 소송지원 신청
(부록1. '취약계층 소송지원 신청'[16쪽] 또는 부록2. 기타정보[31쪽]를 참고. 설문종료)
- ③ 지자체 민원신청
(부록1. '지자체 민원신청'[2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종료)
- ④ 건강영향조사 청원
(부록1. '건강영향조사 청원'[1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종료)
- ⑤ 분쟁조정 신청
(부록1. '분쟁조정 신청'[2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종료)

문4 귀하의 환경오염피해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원하시나요?

① 환경오염 피해구제 신청

(부록1. '환경오염 피해구제 신청'[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종료)

② 지자체 민원신청

(부록1. '지자체 민원신청'[2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종료)

③ 건강영향조사 청원

(부록1. '건강영향조사 청원'[1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종료)



라. 나의 환경오염피해 정리



※ 이 부분은 응답자분들께서 입으신 환경오염피해 상황을 정리 및 점검해 보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1 귀하께서 입으신 환경오염피해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복수 선택 가능)

① 신체피해

② 재산피해

신체피해	(예)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골다공증, 신부전, 단백뇨, 피부염 등
재산피해	(예) 건물(주택 포함), 시설 및 공작물, 차량 및 운반구, 재고, 집기비품, 토양,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산림, 수목 등

문2 귀하의 환경오염피해 관련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다중 선택 가능)

- ① 피해에 대한 자료 (예: 의사소견서, 진단서, 영수증 등)
- ② 원인기업과 주고받은 자료 (예: 항의 서류, 문자 등)
- ③ 사진·영상자료 (예: 오염물 누출 사진 등)
- ④ 언론 보도자료 (예: 피해관련 신문기사, 뉴스 등)
- ⑤ 공공문서 자료 (예: 민원 서류, 행정처분 서류 등)
- ⑥ 공인·전문기관 환경조사결과 ⑦ 기타 ⑧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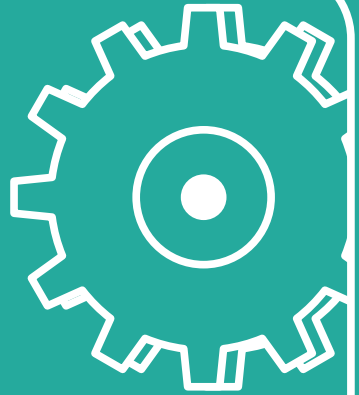
문3 환경오염피해와 관련,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건강검진, 의료비 보조 등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계신가요?

- ① 받고 있다(받았다) (문3-1로 이동) ② 받은 적이 없다 ③ 모르겠다

문3-1. (문3 ①번 받고 있다(받았다) 응답자만)

환경오염피해와 관련, 보조·지원기관 및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기관	지원기간	금 액
(예) 00군청	2012~2015	매월 약 50만원



[부록 1] 피해자 지원제도



1. 환경오염 피해구제 신청



1) 환경오염 피해구제 제도란?

원인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배상능력이 없어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의료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환경오염피해란?

환경배출시설 등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등이 원인이 되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정신적 피해 포함) 및 재산에 발생한 피해를 말합니다. 다만, 원인 사업장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피해구제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① (신청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구제 신청
-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류검토 및 피해조사 실시
- ③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피해 인정 여부 결정
* 의학 및 법률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구제급여 지급

■ 구제급여



3) 구제급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구제급여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5가지가 있으며, 해당되는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 종류	급 여 액
의료비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지출한 금액
요양생활수당	- 의료비 외에 요양에 필요한 금액(피해등급에 따라 월 단위 지급) - 중위소득의 4.3~42.6%('20년 기준, 약 12만원 ~ 127만원)
장의비	-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의비 지원 - 중위소득의 89.7%('20년 기준, 약 279만원)
유족보상비	- 피해 인정 이후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에게 지급 - 장의비의 0.25~15배에서 피해자가 받은 의료비,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을 뺀 금액('20년 기준, 약 670만원 ~ 4,025만원)
재산피해보상비	-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에 대해 지급 - 가구 또는 법인당 5천만원 한도

4) 구제급여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구제급여 신청은 신청서(“구제급여 신청서류” 예시 참조)를 포함한 우측의 공통서류를 구비하고, 구제급여 종류에 따른 제출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본연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도 주택 관련 정보 사업종류에 해당하지 않음(사) 내정 2015. 6. 12. >

구제금융 신청서

보증금/대출/주택/토지/건물/차량/금융/기타		보증금(원)	대출금(원)	주택(㎡)	토지(㎡)	차량(대)	기타(대)
보증금	주택	보증금/대출(원)구제금액/주택(㎡)					
보증금	대출금	1980,01.01					
신청인	주소	광역시 상남구 기술동 150번지					
	연락처	전화번호 : 094-222-3333 휴대전화번호 : 010-1111-2222					
	배우자(이름/성명)	홍철수 씨 자녀					
보증인	주소	부산광역시(구제금액/주택(㎡))					
채권자	주소	1980,01.01					
	주소	광역시 상남구 기술동 150번지					
	채권내용	1. 계약당첨의 일시 : 2013. 03.09일, 보증금, 보증금 상환금 본인 자택 2. 계약의 목적 : 임대 근방에서 발생한 및 악취 3. 계약당첨의 경과 : 차로 중 2015.10.9, 사망 4. 채권의 내용 및 금액(원) : 보증금/대출금/주택(㎡)의 증가에 일체 임대 근방에서 발생한 본인 및 악취로 인한 질병 발생으로 차로 중 사망함					
구제금액							
구제금액	☒ V / ☐ 채권자 / ☐ 보증금/대출금 / ☒ V / ☐ 주택 / ☒ V / ☐ 부동산/차량 ☐ 다른 용도 / ☐ 재산상태변경						
지급할 및 제척번호 00000, 150-11-00000							
(보증금/대출금/주택/토지/건물/차량/금융/기타) 중 보증금, 대출금, 부동산 및 차량은 사(사)에 4.00대 이하의 원금/보증금/주택/구제금액의 지급을 신청함.							
				20000	00000	0000	
신청인				보증금		대출금	
은행/기관/회사 등 약							

2/1000(2/1000)구제금액/주택(㎡) 또는 (구제금액/주택(㎡))



공통서류

1. 구제급여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관련내용 증빙용 첨부서류(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중복지급 확인서 등)

<구제급여별 제출서류>

종 류	제출서류명
의료비	진단서, 검사서류 등
요양생활수당	장해진단서 등
장의비	사망진단서,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유족보상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재산피해보상비	재산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신청서 서식은 '환경오염피해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www.keiti.re.kr/env/relief_00.html

접수처

(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대응실

5) 조금 더 자세한 안내 및 문의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대응실 02-2284-1850

2. 취약계층 소송지원 신청

1)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란?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이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약계층은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고용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보훈대상자 등을 말합니다.

▶ 소송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요 건	기 준	확인 방법	법률 자문	서류 검토	소송 대리
저소득층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 ※ 소득 기준은 통계청 발표자료 참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국세청 자료 등	무료	무료	무료
고령자	65세 이상인 사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무료	무료	본인 부담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전문이가 발행한 장애진단서 등	무료	무료	본인 부담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해당 지역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무료	무료	본인 부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무료	무료	본인 부담
북한 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무료	무료	본인 부담
국가보훈 대상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대상자 증명서	무료	무료	본인 부담
기 타	환경부장관이 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환경부 확인	무료	무료	본인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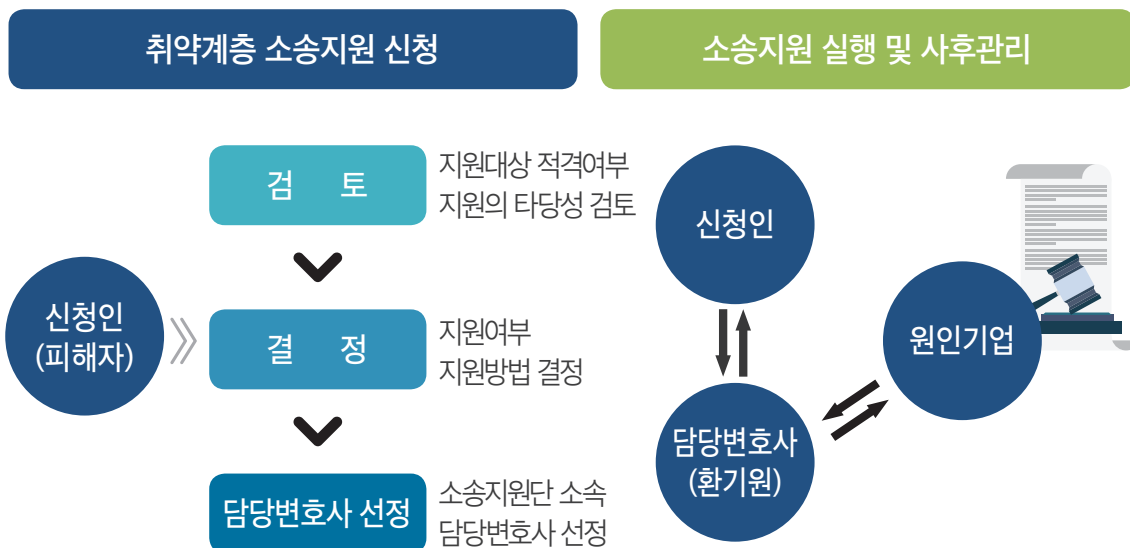


- * 법률자문 : 소송 전 환경오염피해 여부 및 손해배상청구 사항 등에 관한 변호사 자문비용
- * 서류검토 : 소송에 필요한 자료 및 취약계층을 나타내는 증빙서류 등 검토 비용
- * 소송대리 :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변호사 및 재판 제반비용

2) 소송지원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① (신청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소송지원을 신청
-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류검토 및 지원 대상 결정
- ③ (소송지원변호인단) 법률 자문(모든 취약계층) 및 소송대리(저소득층)

■ 소송지원



3) 소송지원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소송지원 신청은 신청서(“소송지원 신청서류” 예시 참조)를 포함한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및 방문신청을 통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 제4항 제1호, 2. 12. >

소송지원 신청서 (단독)

본 배상에 의무를 지닌 신청인이 자기 접수함. (단독)

신청인	성명 (본인·단체명) 주소소재지	총괄 담당 환경시 산업기 기술동 150번지	생년월일 사망지정연 - 1944 등록번호	1980.01.01 해당없음
	전화번호	010-1111-2222	전자우편주소	00@mver.com
피신청인	성명 (본인·단체명) 주소소재지	OO산업 환경시 산업기 기술동 1번지	생년월일 사망지정연 - 1944 등록번호	1988.01.01 111-11-1111
	전화번호	044-111-2222	전자우편주소	11@mver.com
피해 내용	피해발생 일시 - 장소 피해내용 및 금액	1980년 경부터 현재까지, 집 근처 공장 건강 피해/후후 산형		
소송지원 신청내용	신청 취지 및 이유 신청 내용 및 지향사항 금액	환경오염피해 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법률자문, 서류준비, 소송지원 등 필요 신청함 소변조사 자문비 및 소송 진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확인
없이 소송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 년 00 월 00 일

신청인 총괄 담당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원부이름 부속 용도

270mm×210mm(제장지(50g/㎡) 또는 등장지(50g/㎡))

공통서류

1. 소송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관련내용 증빙용 첨부서류(소송지원 대상 취약계층 증명서류 등)

※ 신청서 서식은 ‘환경오염피해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www.keiti.re.kr/env/relief_00.html

접수처

(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대응실

4) 조금 더 자세한 안내 및 문의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대응실 02-2284-1850

3. 건강영향조사 청원



1) 건강영향조사 청원이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경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청원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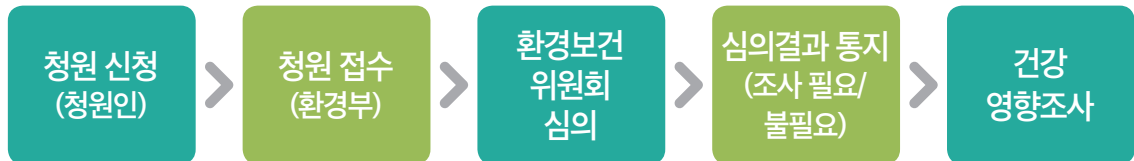
청원을 원하시는 분은 환경부에 청원서와 다음의 자료들을 첨부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료기록,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등 주변지역 환경유해인자의 배출에 관한 자료
 - 현장사진 등 건강영향조사 필요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 ※ 서류의 확보가 어려워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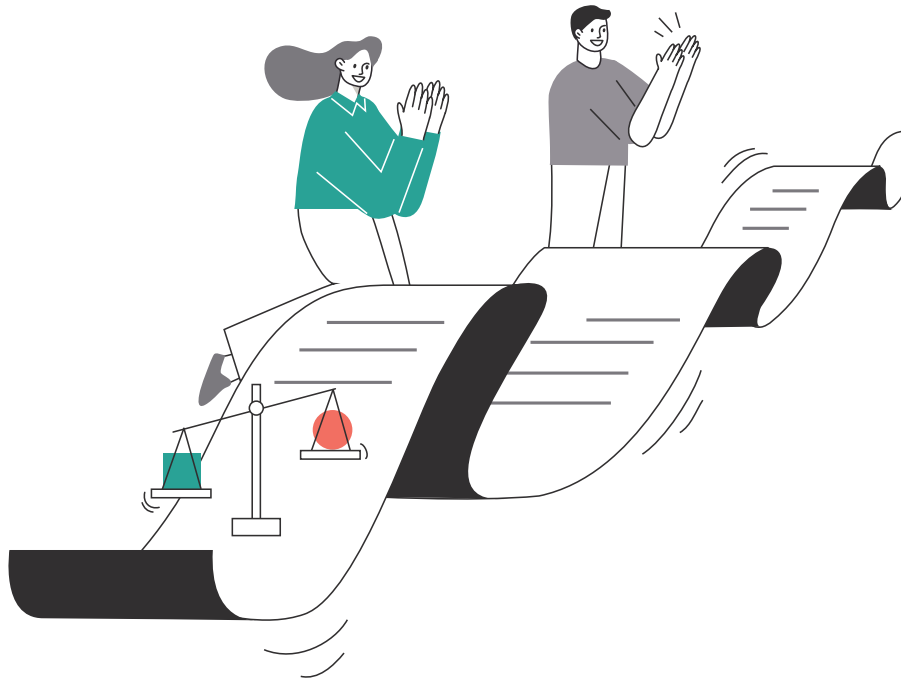
3) 청원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청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4) 조금 더 자세한 안내 및 문의는?

☎ 환경부 민원 대표전화 1577-8866



4. 분쟁조정 신청



1) 환경분쟁조정제도란?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 절차를 통하지 않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2)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아래와 같이 알선, 조정, 재정, 중재로 나뉘집니다.

종 류		내 용	처리 기간
알 선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3개월
조 정		조정안에 대해 분쟁 당사자간의 수락 권고 및 합의 불성립시 조정결정을 하는 절차	9개월
재 정	원인 재정	피해와 원인간의 인과관계 유무만 판단하는 절차	6개월
	책임 재정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	9개월
중 재		분쟁 당사자간 중재를 결정하는 절차	9개월

3) 조정 신청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 피해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 및 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 피해는 제외됩니다.

4) 환경분쟁조정제도와 민사소송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환경분쟁조정	민사소송
적은 비용	상당한 비용(변호사 보수 등)
피해사실 입증책임 완화	피해사실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함
간단한 절차	복잡한 절차
비교적 짧은 시간 소모	긴 시간 소모

5)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환경피해분쟁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중앙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 17개 시·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억원을 초과하는 재정사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제30조에 따른 직권조정,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불복사건, 일조방해·통풍방해·조망저해로 인한 분쟁 재정·조정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당해 시·도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 사무 중 조정가액이 **1억원 이하**인 재정사무, 알선, 상기 이외 조정 사무의 경우

6) 조금 더 자세한 안내 및 문의는?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홈페이지 및 인터넷 접수 : <http://ecc.me.go.kr>
- 우편 및 방문접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72호
- ☎ 전화 : 044-201-7969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주 소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02-2133-3546,8,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홈페이지: http://edc.seoul.go.kr)
부산광역시	환경정책과	051-888-3614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	053-803-3682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032-440-3542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	062-613-4162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대전광역시	환경정책과	042-270-543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울산광역시	환경보전과	052-229-7591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과	044-300-421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경기도	(남부)환경정책과	031-8008-3536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북부)환경관리과	031-8030-2483	경기 의정부시 청사로 1
강원도	환경과	033-249-4141	강원 춘천시 중앙로 1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043-220-4333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	041-635-4414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063-280-355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남도	기후생태과 생활환경팀	061-286-7051	전남 순천시 백강로 38 동부지역본부
경상북도	환경정책과	054-880-3515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055-211-6624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064-710-41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5. 지자체 민원신청

1) 환경피해 민원 해결은 어떻게 하나요?

환경피해의 해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경피해의 원인사업자(공장, 공사 업체 등)에게 직접 저감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별도의 조치가 없거나 계속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 등에 민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셋째, 지자체에 민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환경피해가 계속되는 경우, “**21쪽 환경분쟁조정**”의 환경분쟁조정신청이나 소송 제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제기 당사자가 취약계층인 경우, “**16쪽 취약계층 소송지원**”의 소송지원 신청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원인사업자가 부재·무자력·미상의 경우엔 “**13쪽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의 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자체 민원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해당 지역의 지자체(시·군·구청 환경과, 건축과 등)에 환경피해 발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25쪽 관할 지자체 연락처**” 참조





지자체 연락정보

발생 사업자(원인자)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가 없거나 계속적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 등에 민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관할 지자체 연락처

지 역	담당부서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02-2133-3720
경기도	고양시 환경정책과	031-8075-2641
	과천시 환경위생과	02-3677-2241
	광명시 환경관리과	02-2680-6460
	광주시 녹색환경과	031-760-2157
	구리시 환경과	031-550-2243
	군포시 환경과	031-390-0732
	김포시 환경과	031-980-2244
	남양주시 환경정책과	031-590-2241
	동두천시 환경보호과	031-860-2250
	부천시 환경과	032-625-3166
	성남시 환경정책과	031-729-3173
	수원시 환경정책과	031-228-3995
	시흥시 환경정책과	031-310-5982
	안산시 환경정책과	031-481-2616
	안성시 환경과	031-678-2621
	안양시 환경정책과	031-8045-2924
	양주시 환경관리과	031-8082-6340
	여주시 환경과	031-887-2981
	오산시 환경과	031-8036-6421
	용인시 환경과	031-324-3159
	의왕시 환경과	031-345-3813
	의정부시 환경관리과	031-828-4434
	이천시 환경보호과	031-644-2357
	파주시 환경보전과	031-940-8472
	평택시 환경정책과	031-8024-3758
	포천시 환경지도과	031-538-3248
	하남시 환경정책과	031-790-5582

▶ 관할 지자체 연락처

지 역	담당부서	전화번호
경기도	화성시	환경지도과
	가평군	환경과
	양평군	환경과
	연천군	환경보호과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생활환경과
강원도	강릉시	환경과
	동해시	환경과
	삼척시	환경보호과
	속초시	환경위생과
	원주시	환경과
	춘천시	환경정책과
	태백시	환경보호과
	고성군	환경보호과
	양구군	환경위생과
	양양군	환경과
	영월군	환경위생과
	인제군	환경보호과
	정선군	환경과
	철원군	청정환경과
	평창군	환경위생과
	홍천군	환경과
	화천군	환경과
	횡성군	환경관리과
충청남도	계룡시	환경위생과
	공주시	환경보호과
	논산시	환경과
	당진시	환경정책과
	보령시	환경보호과
	서산시	환경생태과
	아산시	환경보전과
	천안시	환경정책과
	금산군	환경자원과
	부여군	환경과
	서천군	환경보호과
	청양군	환경보호과



▶ 관할 지자체 연락처

지 역		담당부서	전화번호
충청남도	홍성군	환경과	041-630-1456
	예산군	환경과	041-339-7512
	태안군	환경산림과	041-670-2789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	042-270-5432
충청북도	제천시	자연환경과	043-641-6393
	청주시	환경정책과	043-201-4602
	충주시	기후에너지과	043-850-3672
	보은군	환경위생과	043-540-3533
	옥천군	환경과	043-730-3442
	영동군	환경과	043-740-3401
	증평군	환경위생과	043-835-3622
	진천군	환경과	043-539-3465
	괴산군	환경과	043-830-3624
	음성군	환경과	043-871-3792
	단양군	환경과	043-420-2661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과	044-300-4247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환경정책과	051-888-3614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환경보전과	052-229-3191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	053-803-3681
경상북도	경산시	환경과	053-810-5452
	경주시	환경과	054-779-6373
	구미시	환경보전과	054-480-5263
	김천시	환경위생과	054-420-6778
	문경시	환경보호과	054-550-6844
	상주시	환경관리과	054-537-7458
	안동시	환경관리과	054-840-5283
	영주시	환경보호과	054-639-6782
	영천시	환경보호과	054-330-6195
	포항시	환경정책과	054-270-3093
	군위군	환경위생과	054-380-7941
	의성군	환경과	054-830-6568
	청송군	환경축산과	054-870-6182
	영양군	환경보전과	054-680-6511
	영덕군	환경위생과	054-730-6583
	청도군	환경과	054-370-2183

▶ 관할 지자체 연락처

지 역		담당부서	전화번호
경상북도	고령군	환경과	054-950-6515
	성주군	환경과	054-930-6182
	칠곡군	환경관리과	054-979-6693
	예천군	환경관리과	054-650-6183
	봉화군	녹색환경과	054-679-6403
	울진군	환경위생과	054-789-6131
	울릉군	환경위생과	054-790-6188
경상남도	거제시	환경과	055-639-3952
	김해시	수질환경과	055-330-2733
	밀양시	환경관리과	055-359-5317
	사천시	환경보호과	055-831-2766
	양산시	환경관리과	055-392-2664
	진주시	환경관리과	055-749-8652
	창원시	환경정책과	055-225-3532
	통영시	환경과	055-650-5420
	함안군	환경과	055-580-2421
	거창군	환경과	055-940-3490
	창녕군	환경위생과	055-530-1616
	고성군	환경과	055-670-5875
	하동군	환경보호과	055-880-2571
	합천군	환경위생과	055-930-3311
	남해군	환경녹지과	055-860-3272
	함양군	환경위생과	055-960-6110
	산청군	환경위생과	055-970-7101
	의령군	환경위생과	055-570-2610
전라남도	광양시	환경과	061-797-2333
	나주시	환경관리과	061-339-8931
	목포시	환경보호과	061-270-3332
	순천시	생태환경과	061-749-5776
	여수시	기후생태과	061-659-3824
	담양군	생태환경과	061-380-3080
	곡성군	환경축산과	061-360-8361
	구례군	환경교통과	061-780-2311
	고흥군	환경산림과	061-830-5337
	보성군	환경생태과	061-850-5345



▶ 관할 지자체 연락처

지 역	담당부서	전화번호
전라남도	화순군	행복민원과 061-379-3054
	장흥군	환경관리과 061-860-6040
	강진군	환경축산과 061-430-3302
	해남군	환경교통과 061-530-5337
	영암군	환경보전과 061-470-2157
	무안군	환경과 061-450-5564
	함평군	환경상하수도과 061-320-1815
	영광군	도시환경과 061-350-5380
	장성군	환경위생과 061-390-7061
	완도군	환경산림과 061-550-5501
	진도군	환경산림과 061-540-3762
	신안군	세계유산과 061-240-8154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 062-613-4160
전라북도	군산시	환경정책과 063-454-3406
	김제시	환경과 063-540-3332
	남원시	환경과 063-620-6262
	익산시	환경정책과 063-859-7406
	전주시	환경위생과 063-281-2326
	정읍시	환경과 063-539-5711
	완주군	환경과 063-290-2694
	진안군	환경과 063-430-2337
	무주군	환경위생과 063-320-2388
	장수군	환경위생과 063-350-2531
	임실군	환경보호과 063-640-2355
	순창군	환경수도과 063-650-1747
	고창군	생태환경과 063-560-2882
	부안군	환경과 063-580-4332
제주도	제주시	환경지도과 064-728-3112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064-760-2921

[부록 2] 기타 정보



기타 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2번 법률상담 콜센터
- 사이버상담(공단 홈페이지) : www.klac.or.kr
- 방문상담 : 공단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통하여 하루 전 선착순 예약을 한 뒤, 지역별 공단사무실을 통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피해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협회 소속 변호사로 하여금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법률지원 기관입니다.

- 안내 및 문의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대한변협회관 18층
 - ☎ 전화 : 02-3476-4000



환경오염피해 어디서 도움받나요?

- 환경오염피해 자가진단 노트 -

TEL : 02-2284-1850 www.keiti.re.kr/env/relief_00.html